

● 제286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9 4. 2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김정환 의원 대표발의 및**

**서울특별시시장 제출 】**

의안번호 537, 588

**I. 조례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가. 김정환 의원 제출 일부개정조례안 원안(537)**

- (1) 제 안 자 : 김정환 의원(발의의원 18명)
- (2) 제 안 일 : 2019. 3. 27.
- (3) 회 부 일 : 2019. 3. 29.

**나. 서울특별시시장 제출 일부개정조례안 원안(588)**

- (1)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시장
- (2) 제 안 일 : 2019. 03. 29.
- (3) 회 부 일 : 2019. 04. 0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김정환 의원 제출 일부개정조례안(537)**

-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사상자 지원사업)에서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의사상자 및 의사상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장사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개별 조례인 「서울특별시 장사등에 관한 조례」에 그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 의사자에 대한 시립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감면 내용을 신설함(안 제7조제2항 및 별표).

## 나. 서울특별시장 제출 일부개정조례안(588)

### (1) 제안이유

-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 시스템 이용자에게 한시적으로 시립장사시설의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임.

### (2) 주요내용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시립장사시설의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사용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 100분의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안 제7조

제4항)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 3. 참고사항

#### 가. 김정한 의원 제출 일부개정조례안(537)

- (1) 관련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 예산 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3)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 나. 서울특별시시장 제출 일부개정조례안(588)

- (1) 관련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 (2) 예산 조치 : 협의완료
- (3) 기 타 :
  - (가)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 (나) 입법예고(2018. 2. 21. ~ 3. 13.) 결과: 의견없음
  -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정창훈)

### 1 개정안의 취지

- 의안번호 537번 김정환의원의 안은 「서울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서 시립장사시설 사용료 및 관리비 납부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 서울시 의사상자에 대하여 빠져 있어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음.
- 의안번호 588번 서울특별시시장 제출한 안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로페이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기간(2019년 12월 31일까지) 시립장사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제출되었음.

### 2 주요사항 검토

#### 가. 김정환의원의 안 -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지원(안 제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7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국	제7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p>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며, 서울특별시민과 다른 지역 주민을 구분하여 사용료·관리비를 달리 정할 수 있다.</p> <p>③ ~ ⑦ (생략)</p>	<p>--공헌자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국민기초생활 -- ----- ----- ----- ----- ----- ----- -----.</p> <p>③ ~ ⑦ (현행과 같음)</p>
--	---

- 현행 조례 사용료 징수 및 감면 규정(제7조제2항)에서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만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의사상자 범위(제4조제2호)는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의 이용료 감면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장사시설 사용 대상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음.
- 서울시는 2011년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의사상자<sup>1)</sup> 및 의사자 유족, 의상자 가족에 대해 서울시가

1) -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함.  
- "의상자(義傷者)"라 함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자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설치·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및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의사상자에 대한 공원 입장료와 공연 이용료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있음.

- 사회적 여론과 집행부 방침을 고려할 때, 의사상자에 대한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다만, 개정안에 장사시설에 대한 지원 대상자가 의사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의사상자에 대한 실질적 혜택 부여를 위해서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자 범위에 의상자를 포함한 의사상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사료됨.

#### ※ 의사상자 지원 추진 실적(2019년 1월 기준)

##### 의사상자예우법

##### 제5조(인정신청 등)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행위의 사실 여부 확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인정 소요기간

- 법률상기간 : 기초단체에서 광역단체로 보건복지부에 신청이 접수되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인정 또는 불인정이 결정되는 기간은 60일 이내이고 30일 연장이 가능.
- 보건복지부 사회자원서비스 현황 : 현재 시도에서 신청이 접수되면 수시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함.

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18년도에는 7회 개최되었음.

- 서울시 : 18년도에 18.10.2.신청하여 12.5 보류, 19.2.8일 인정결정(97일 소요)이 된 바 있고, 18.5.3, 5.14, 5.23 3건이 신청하여 복지부에서 7.26 결정(83일,72일,63일소요), '18.3.23.신청 4.5결정(13일소요) 된 바 있음.

※ 최근18.12.31.발생되어 언론의 이슈를 받고 있는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의사 건은 자치구에서 서류구비로 시간이 소요되어 4.1일자로 서울시에서 복지부로 신청한 상태임.

#### 나. 서울특별시시장 안 - 시립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소상 공인 간편결제 사항 신설(안 제7조제4항)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 ④ 시립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별표와 같다. <단서 신설>	제7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 ④ ----- ----- ----- . <u>다만,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의 사용료를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 시스템을 말한다)으로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5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u>

- 서울특별시장의 제출한 개정안(제 7조제4항)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로 시립장사시설의 사용료를 결제 할 경우 해당 결제 금액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사용료 감면을 시행하는 내용임.
-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으나, 조례의 시행기한을 '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여 시행하는 시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
- 한시적인 기간 동안만을 운영하는 것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기간을 정한 일몰사업에 대한 해당사업의 안정성, 시장의 혼란 등의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사료됨.

### 3 종합 의견

- 김정환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은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규정(제7조제2항)에서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제7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의료급여 수급자(제7조제1항제3호)에 대하여만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의사상자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의사상자 범위(제4조제2호)에서 서울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의 이용료 감면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현행 조례 상에는 의사상자에 대한 관련 지원 내용이 누락되어 있음.

- 의사상자에 대한 정당한 예우와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개정안과 같이 의사상자에 대한 장사시설 사용료 등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의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 다만, 개정안에 장사시설에 대한 지원 대상자가 의사자로 한정하고 있는 바, 의상자 가운데서도 의사자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상자를 의상자를 포함한 의사상자로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개정안(제7조제4항)은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로 장사시설 사용료를 결제 할 경우에는 일정한 감면 혜택을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짐.
- 그러나 한시적인 기간 동안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기간을 정한 일몰사업에 대한 해당사업의 안정성, 시장의 혼란 등의 문제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제로페이 사업의 홍보강화와 저변확대라는 면에서 상당한 중점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겠으나, 소상공인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시장에 미치는 제한적인 효과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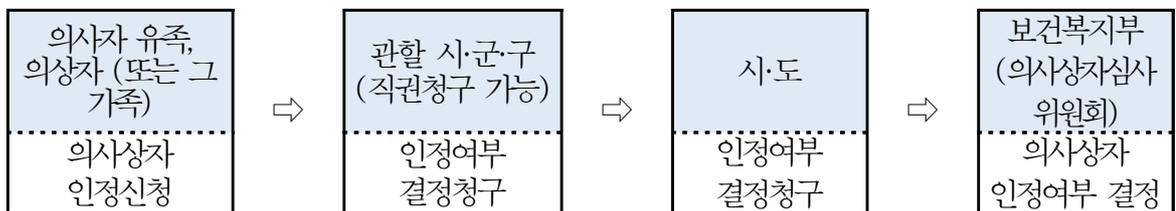
## 참 고 1 의사상자 지원 내용

### □ 의사상자 특별위로금 지급(조례 제5조, 시행규칙 제2조·제3조)

- 지급대상 : 보건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본인

#### ※ 의사상자 인정절차(보건복지부)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가족 포함) → 주소지 또는 구조행위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 / 관할 구청장 직권청구 가능 → 서울시 → 보건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 인정여부 결정



- 지급방법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본인 신청에 의거 신청인 계좌에 지급

※ 부득이한 경우 신청에 의해 현금 지급 가능 : 현금수령증

- 지급순위

· 의사자 : 유족(순위 :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조부모, 5. 형제자매)

· 의상자 : 본인(사망시 의사자 유족 순위와 동일)

※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 공동신청 : 특별위로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

▶ 단독신청 : 특별위로금 포기서(붙임 2) 제출 후 신청인에게 전액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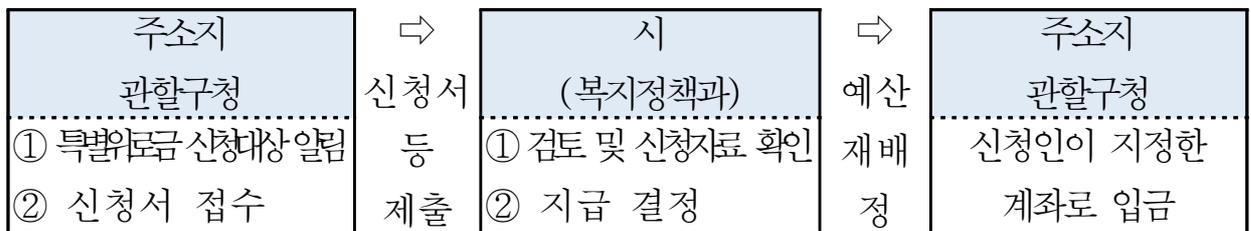
- 지급금액 : 의사자(3천만원), 의상자(1급 1,500만원 ~ 9급 50만원)

<의상자 등급별 특별위로금 지급금액>

(단위: 천원)

부상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급액	15,000	12,500	10,000	7,500	5,000	3,000	1,000	750	500

- 지급절차



- 소요예산 : 150,000천원

: 산출근거 : 30,000천원(의사자) × 4명 = 120,000천원

15,000천원(의상자 1급) × 2명 = 30,000천원